

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추진 현황

(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)

가. 배경 및 현황

□ 추진배경

-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녹색 분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의 필요성이 증가 中
- 환경부도 녹색금융 4대 원칙 및 추진전략(안) 도출, 녹색금융 법안 발의 등 다각적 노력을 진행 중이나,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

□ 그간의 경과

- (추진TF) 녹색금융 추진TF(환경부·금융위 공동 주재, '20.8~)를 통하여 실무작업반* 운영 및 녹색금융 민관협력 강화
* 기후리스크 관리(금융위), 녹색투자 활성화(환경부), 기업공시 개선(금융위)
- (녹색채권)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절차, 대상 프로젝트를 포함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(환경부·금융위, '20.12)
- (사전연구) 녹색금융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금융 분류 체계,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전 연구 추진('20.4~)

나. 핵심과제

① 기금·금고 선정시 탈석탄 금융 지표 반영 확대

- (수계기금) 수계기금 운용사 선정시, 가점지표에 탈석탄금융 선언 여부 등 녹색금융 관련 활동을 반영('21.5까지 지침개정)
 - 수계기금 외에 환경부 산하기관(11개) 금고 선정에도 녹색금융 지표 반영 추진('21~)
- (타부처 확대) 환경부가 녹색금융 지표안을 만들어 복지부·기재부·행안부 등에 반영 요청('21.上)

② 기후금융지지 선언 등을 통한 선도적 역할 강화

- (지지선언) 기후금융 지지선언식*(‘21.2, 사회책임투자포럼)에서 환경부의 기후금융(TCFD) 지지선언 사례, 녹색금융 정책 추진 계획 등 공유
 - * KB,NH,우리금융지주 등 96개 금융기관이 탈석탄선언, TCFD 지지선언 등 기관의 녹색 금융 추진 방향을 선언하는 행사로, 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 추진
- (국제협력) 국내 정부기관 최초 TCFD* 지지선언(‘20.5)에 이어 국제 지속가능금융 플랫폼(IPSF**) 가입 추진(‘21.上, 외교부·금융위 협조)
 - * Task-Force on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 : G20 요청에 따라 FSB(금융안전위원회)에서 ‘15.12월 발족시킨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
 - **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: EU주도로 설립된 녹색금융 정보 공유를 위한 정책결정자들의 다자간 포럼
- (홍보) 가칭 ‘녹색금융 어워드’ 신설·운영, 녹색채권 모범사례 (Best-practice) 발굴 MOU 체결 등 적극 홍보 추진
 - * 녹색금융상품 발행, 환경책임투자, 환경정보공개 등 주요 부문에 우수기업·금융기관 선정·포상

③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*(K-Taxonomy) 구축

- * 녹색투자의 대상인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을 말하며 녹색금융의 ‘그린워싱’ 방지
- (분류체계 마련) EU, ISO, 중국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(‘21.6)
- (시범적용) 금융기관과 MOU 체결을 통한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*(‘21.下), 중장기적으로 녹색금융 표지제도(label)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추진(‘21)
 - * 민간 금융기관과의 MOU를 통한 녹색 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 금융상품 발행 등

< 녹색분류체계(초안) 주요 내용 >

- ▶ (주요 대상)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*, 81개 경제활동 도출 (‘20.11.)
 - * EU, ISO,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, 발전업, 건설업, 운송업 등 선정
- ▶ (기술적기준)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(threshold) 단계적 마련
- ▶ (환경법규)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 구체화
 - * EU : DNSH(Do No Significant Harm)원칙으로 준수대상 환경 법규 제시

④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

- (모범사례 발굴) 금융기관·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모범사례(Best Practice) 발굴·확산('21.2.16)
- (인센티브 제공) 녹색채권 발행자 비용 지원, 녹색채권 면세혜택* 제공 등 녹색채권 발행 유인체계 개선 추진

* 「녹색금융특별법」 제10조(채권발행의 특례) : 법인세, 소득세 감면

< 녹색채권 비용지원체계(안) >

- ▶ (개요) 일반채권 발행에 비하여 녹색채권 발행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외부평가비용 지원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촉진
- ▶ (지원범위) 금융기관·기업 등에 의해 발행되는 원화 녹색채권
- ▶ (해외사례) 일본은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을 약 4억원 한도로 지원, 싱가포르는 외부검토 비용을 약 8천만원 한도로 지원 중

⑤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책임투자 지원

- (정보공개 확대)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을 확대 (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→ 개선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)
 - 기업지배구조(G) 공시와 연계하여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공개대상의 확대 추진(「환경기술산업법」 개정안 국회 계류 중)

* 현재 공공기관,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 등 1686개 기관 대상

<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확대 일정 >

적용시기	'19년	'22년	'24년	'26년
자산총액	2조원 이상	1조원 이상	5천억원 이상	5천억원 미만

- (평가체계) 국내외 ESG 평가, 해외 거래소 환경정보 공시제도 등의 분석을 통한 표준평가 지표·산식 마련 및 시범 적용('21.下)
 - 금융기관 등에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, 평가와 관련하여 녹색금융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('22~)